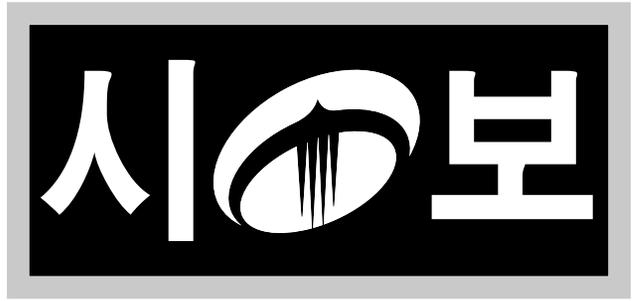


포 향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28호 2009. 5. 12(화)

선	기 관 의 장
람	

포 향 시

○ 시장지시사항 2

◀ 훈 령 ▶

○ 포항시 명예자문대사 운영 규정(제213호) 5

회								
람								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4. 2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 표시 이행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소비자가 신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바람. ○ 가로환경정비 철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임후 지속적인 가로환경정비 지시에도 정비관리가 미흡하므로 지속 정비를 추진하기 바라며, - 불법 컨테이너 박스 등 위법시설물은 행정예고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철저히 정리하기 바람. ○ 시정의 기획홍보 추진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7일 포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국제요트대회에 대한 대외홍보가 부족함. - 서울 등 대도시에 대중이 많은 곳에 기회시마다 홍보를 실시하여 포항이미지를 높이기 바라며, - 특히, 효과가 높은 라디오광고를 검토하고 대도시에 포항을 지속홍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. ○ 대구시, 경산시 항만물동량 확보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만물동량 확보를 위한 대구시와 경산시 방문계획을 추진하여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, - 방문전 지역별 물동량을 조사하여 해당 시에 협력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바람. 	<p>전 부 서 (환경위생과) (농축산과) (해양수산과)</p> <p>전 부 서 (건 설 과) (남, 북구청)</p> <p>전 부 서 (공보담당관실) (체육지원과)</p> <p>항만정책팀</p>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'09-06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미시와 경제협력 MOU체결이후 실질협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대이상으로 언론과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실질협력이 되도록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, - 구미에 있는 100여 일본기업인의 포항방문 추진과 죽도시장 방문에 따른 지도배포와 안내가 필요하며, -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구미를 상대로 추진하고 포항 상의에서 구미상의 초청 등 단체별 초청을 추진하여 실질적 협력이 되도록 하기바람. 	경제통상과
'09-06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락지 안전점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여름날씨처럼 고온으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. - 행락철(7~8월)에 대한 정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날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행락지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바람. 	재난안전과
'09-007 (추가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절약 캠페인 대대적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뭄이 깊은 지금이 물절약 시책추진 적기이므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기 바라며, - 통·리장 회의를 통해 반장회의를 실시토록 하여 조직적인 물절약운동 추진과 실적보고를 추진하며, - 포스터 제작과 홍보물 부착, 각 단체에 홍보 등 하나하나 체크하여 확실히 추진하기 바람. 	상수도과

훈 령

포항시 명예자문대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년 5월 12일

포항시 훈령 제 213 호

포항시 명예자문대사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시 명예자문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항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대외 통상 활동증진은 물론, 글로벌 포항 건설 및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명예자문대사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자문한다.

- 1. 국제교류 업무(자매결연 등)

- 2. 대외경제 및 통상활동
- 3. 우리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세계화 역량 증진
- 4. 외국인 투자유치, 해외시장 개척활동
- 5.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
- 6. 기타 국제관계 증진 등을 위한 활동

제3조(위촉) ①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제교류·대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외공관장, 한국외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명예자문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 시장이 필요시 직접 위촉할 수 있다.

② 명예자문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촉 기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한다.

- 1. 연령은 향후 3~5년 정도 자문대사로 근무 가능한 자
- 2. 미주, 유럽, 일본, 중국 등 주요국 거주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
- 3.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자
- 4. 특히,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, 해외시장개척 활동 등 우리시 차원의 지방외교 및 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

제5조(해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촉 기간 만료 전이라도 명예자문대사를 해촉 할 수 있다.

- 1. 명예자문대사의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- 2. 명예자문대사의 신분변동이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
- 3. 기타 제7조에서 규정한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명예자문대사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6조(실비보상) ① 명예자문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의 요청에 의한 각종 정보 및 자료수집, 국내·외 현지 자문 활동 등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“별표 1”의 기준에 의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

있다.

② 명예자문대사 실비보상 청구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한다.

제7조(품위유지) 명예자문대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명예자문대사 자문에 따른 실비 보상 기준(제6조 관련)

지 급 범 위	지 급 기 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교류 및 대외통상 국내사업 추진에 따른 실 경비 ▪ 자문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 ▪ 각종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관련 행사, 심포지엄, 세미나 등 행사 참가비 및 여비 ▪ 시의 요청과 자문에 응하기 위해 참석하는 제반 실 경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비 지급 ※ 국내 여비는 민간인 여비보상 준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교류 및 대외통상 국외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▪ 해외방문단, 시장개척단, 투자유치 활동 등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 ▪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, 심포지엄, 세미나, 회의 등 참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비 지급(민간인 여비보상 준용) ▪ 항공 운임 ▪ 체재비 등

※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
[별지 제1호 서식]

명예자문대사 자문에 따른 실비 보상금 청구서

(단위:원)

구 분	기 간	내 용	활동실적	산출금액
· 자문을 위한 정보수집				
· 자문을 위한 자료수집				
· 해외전화, 우편료 등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				
· 국제교류 및 대외통상 등 활동에 따른 국내외 여비				
· 기 타				

※ 국내외 여비를 별도 청구 및 지급시 본 청구는 제외함

년 월 일

청 구 인 : (인)

첨부 : 증빙서류 부.

포 항 시 장 귀하